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1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만희·나경원·고동진

정희용 · 엄태영 · 최은석

이양수 · 이종배 · 유상범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 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국제 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 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 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과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 정되는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 다. 정부가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4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생산 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 아.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7조제1항).
- 자. 정부는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과 다음 각 목의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7호에 따른 식품,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나. 농산물 유통업: 농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산업
 - 다.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농촌 관련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라.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농업 및 관련 활동에 투입되는 농업 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
 - 마. 그 밖에 농업 관련 전 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제14조제2항제6호 중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을 "그 밖에 농산업 발전 전략 등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추진현황"을 "추진현황 및 농산업 동향"으로 한다.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4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종전의 제34조)의 제목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을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 관련 산업"을 "식품산업 등 농산업"으로,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을 "관련 기술"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으

로,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개발"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식품산업 인력·기술"을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기술"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을 "농산업"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산물 및 식품"을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을 "농

산물・식품 등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u>농업과 다음 각 목의 산업으</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u>을 말한다</u>
	가.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
	<u>7호에 따른 식품, 다른 산</u>
	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
	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u>산업</u>
	나. 농산물 유통업: 농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
	<u>하기 위한 보관·배송·포</u>
	장과 이와 관련한 정보ㆍ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
	<u>로 하는 산업</u>
	다.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
	업: 농업ㆍ농촌 관련 활동
	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
	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u>산업</u>

9. (생략)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략)
- 6. <u>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u>
 <u>농업·농촌</u> 및 식품산업의 종
 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라.	. 농업	를 관	1면	투	입재_	산약	<u> </u>
	농업	및	관련	활	동에	투	입
	되는	농	업기	계,	농업	자기	대,
	농업	시설	및	농	약 · ㅂ]료	•
	사료	• 동	물약	품	등을	제:	조
	· 판'	매하	는 /	산업			

<u>마. 그 밖에 농업 관련 전 · 후</u> <u>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u> <u>업</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 6. <u>그 밖에 농산업 발전 전략 등</u> <u>농업·농촌</u>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추진현황 및 농산업 동향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제34조의2(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 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 ·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 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 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 하기 위하여 농산업 육성에 관 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삭 제>

 $\underline{\mathbb{O}} \cdot \underline{\mathbb{O}}$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 런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 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 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 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 ·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 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 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 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 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업 및 <u>식품 관련</u>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 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u>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u> 연 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음)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
업 관련 기술 · 연구 등의 진흥)
① <u>식품산업</u>
등 농산업
관련 기술
<u>.</u>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
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u>식품산업</u>
 등 농산업의 기술 등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개발

② (생 략)<신 설>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u>식품</u>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 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

----- <u>식</u>품

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농업경영체,</u>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 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u>산업 능 농산업 인력·기술</u>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u> 지원)</u> <u>농산업</u>
제59조 <u>(농산물·식품 등 농산업의</u>
<u>수출 진흥)</u> ①
<u>농산물·식품 등 농산업</u>
· ②
2
<u>농산물·식품</u>
등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u>.</u>